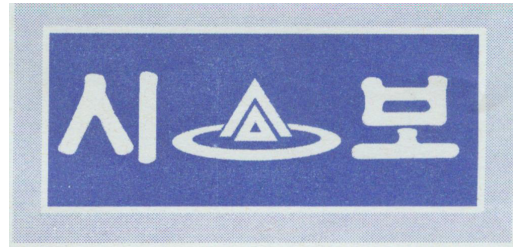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20호 2011. 4. 1.(금)

【조 례】

- 제759호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 제760호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제76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제762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
- 제763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제764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예 규】

- 제187호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33

【고 시】

- 제2011-27호 월미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37
- 제2011-32호 검상 농공단지 세목(정정)고시 56

【공 고】

- 제2011-278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0
- 제2011-300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7
- 제2011-314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83
- 제2011-315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1
- 제2011-317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96
- 제2011-331호 공인 폐기 공고 106
- 제2011-3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8호선, 소로3-30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 공고 109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03.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1년 04월 01일

공주시 조례 제 759 호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
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
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영행정의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컨텍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컨텍센터(Contact Center)”란 시민으로부터 전
화·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신고·건의·문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한 상담·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는 물론, 민원서비스 및 경영행
정에 대한 고객관계관리 리서치, 마케팅 홍보활동 등을 하여 주는 종합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명칭) 컨텍센터의 명칭은 “공주시 컨텍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
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컨텍센터는 공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컨텍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컨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
2. 민원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 및 마케팅 고객관계관리 차원의 리서치, 홍보활동, 서비스이용활성화 유도 등 고객관리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컨텍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 및 고객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컨텍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컨텍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컨텍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컨텍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관독실, 사무실
4. 그 밖의 컨텍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부대시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컨텍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컨텍센터 사무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컨텍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컨텍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컨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이외의 다양한 상담채널에 의한 민원 및 홍보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컨택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컨택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컨택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컨택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03.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1년 04월 01일

공주시 조례 제 760 호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 제목 중 “발급기의 설치”를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급기의 인영”을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의 인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고유번호

③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중 “발급기 사용”을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기 사용”을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기의 고장”을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고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계기 또는 <u>발급기</u>의 설치사용)</p> <p>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 또는 <u>발급기</u>의 인영에 의하여 중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u>계기 또는 발급기</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계기 또는 발급기 고유번호</u></p> <p>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제7조(----- <u>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u>의 -----)</p> <p>① ----- ----- <u>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u>(이하 “<u>주민시스템</u>”이라 한다) ----- -----</p> <p>②<u>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u>으로 발급하는 <u>제증명</u>에는 제5조에 따른 <u>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u>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고유번호</u></p> <p>③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4조(계기 또는 <u>발급기 사용</u> 수입금의 정산)</p> <p>① (생략)</p> <p>②계기 또는 <u>발급기 사용</u>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계기 또는 <u>발급기의</u>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4조(---- <u>발급기 및 주민시스템</u> ----)</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u>에 ----- 에 따라 -----</p> <p>③ ----- <u>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u> ----- ----- -----</p> <p>④ (현행과 같음)</p>

공주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03.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1년 04월 01일

공주시 조례 제 761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 를 “기업유치
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
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 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2항을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p> <p>① ~ ② (생략)</p> <p>1. ~ 2. (생략)</p> <p>3. <u>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u></p> <p>③ (생략)</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기업유치 심의 위원회</u> --- -----</p> <p>③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u>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u></p> <p><u>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u></p> <p><u>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현행	개정안
<p>제9조(기반시설 지원)</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안에 부지 16,500제곱미터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개별공장설립(신설) 또는 시 관할구역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9조(기반시설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공주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03.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1년 04월 01일

공주시 조례 제 762 호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
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공주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공주시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제5조(고지방법)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한 이·통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6조(실비변상)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7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공주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업무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9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4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7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 공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9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03.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1년 04월 01일

공주시 조례 제 763 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바타”란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상징인물을
말하고, “아이템”이란 아바타에 부가되는 의복, 장식, 동물, 주택 등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이버공주시민에게 사이버공주시민 확보 공로에 부응하는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제6조의2 및 제6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마일리지 부여)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마일리지는 가입·유지·활동·구매 마일리지 등 4종으로 하며 알밤 점수로 관리한다.

③ 알밤점수는 환가할 경우 1점당 10원으로 계산한다.

④ 가입마일리지는 사이버공주시민 가입 시 부여하며, 유지마일리지는 매년 1월1일 부가하되 각각 100점으로 한다.

⑤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행위 시 부가한다.

⑥ 구매마일리지는 사이버 가맹점 및 시범마을 이용(숙박, 식사, 체험 등), 특산물 구입(가맹점, 시범마을, 고맛나루장터 등 활용), 여름캠프 선사 교실 등 참가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알밤점수로 환산하여 숙박, 참가, 구입 등의 종료 시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누적 점수, 사용가능 점수, 적립 예정 점수로 구분 관리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공주시민이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에 알밤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알밤점수는 결제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아바타 관리, 아이템 구입 등에 소모되는 알밤점수는 10점 이내로 하여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④ 개인별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사이버공주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하며, 부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점수도 소멸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준의 누적점수에 도달한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초청행사, 팸투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유한 알밤점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제6항 및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이버공주시민증(제4조제2항과 관련)

제 186274 호



사이버공주시민증

성 명 : 이███
 생년월일 : 1983.11.21
 주 소 : 공주시 계룡면 양화1리

귀하를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공주시민임을 증명합니다.

공주시장

앞장

사이버공주시민 혜택

1. 사이버시민증 수여
2. 문화유적지 관람입장료 면제(무령왕릉,공산성,석정리박물관)
3.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식당, 숙박업소, 레저스포츠 등 사이버공주 가맹점이용시 할인혜택
4.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공연 및 축제 등 유익한 정보 제공
5. 년중 개최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푸짐한 상품과 경품을 받는 기회 부여

뒷장

제 11781 호



가족회원증

성 명 : 이███
 생년월일 : 1979.4.21
 주 소 : 공주시 신관동 신관1동

귀하를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공주시민임을 증명합니다.

공주시장

성명	생년월일	관계
이███	2006.12.23	딸
이███	1974.03.08	배우자
이███	2005.01.22	아들

1.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별표 2]

사이버공주시민 가입신청서(제4조제1항과 관련)

사이버공주시민 가입신청서 The Application Form of Gongju Cyber Citizens							
가입신청인	성명 ※ Name	생년월일	년	월	일(양, 음)	성별	
	현주소 ※ 국적: Country					가족회원 신청	
	핸드폰	이메일 ※ E-mail	@				관계
	사이버주소	공주시	읍면동	리(동)	동	이름	
	추천인	고향, 출생지, 연고, 본적, 방문지, 1차촌, 자매마을, 친척집 등 본인이 희망하는 리/동 까지의 사이버상 공주 주소입니다.(미 기재시 임의로 지정해 드립니다.)				생년월일	
	사이버공주 홈페이지 ID	회망 ID 사용					
	임의 ID 사용	아이디를 기재하지 않으면 임의로 ID를 부여					
	• 초기 비밀번호는 핸드폰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 • 사이버공주홈페이지에서 약관동의를 하시면 온라인활동 가능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공주시의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공주시에서 제공하는 E-mail 과 SMS수신에 동의합니다.							
공주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Date.		※ Signature.		※ 외국인은 성명, 국적, 이메일 기재 후 서명	

[별표 3]

활동별 알밤점수 적립(삭감)표

활동명	적립(삭감) 점수	제한 사항	비고
로그인	2	1일 1회	※ 점수 관리 - 등록물 삭제시 적립점수 삭감 - 유사 활동은 유사점수 부여
동영상 등록	5	1일 2회 이내	
사진 등록	3	1일 1회	
댓글 등록	1	1일 3회 이내	
게시물 등록	2	1일 1회	
문자 전송	-2	월10회 초과 시 회당	
모바일시민증 발급	-10	3회 초과 시 회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 (생략)</p> <p>1. ~ 7.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제6조(혜택) ① (생략)</p> <p>1. ~ 7. (생략)</p> <p>8. <u>사이버공주시민에게 홈페이지 이용 실적 및 사이버공주시민 확보에 기여한 공로에 부응하는 기념품 제공 및 마일리지(mileage)를 부여하고 일정 마일리지를 쌓은 사이버공주시민에게 무료 문자메시지나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 제공</u></p> <p>9.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제2조(용어)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아바타”란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상징인물을 말하고, “아이템”이란 아바타에 부가되는 의복, 장식, 동물, 주택, 등을 말한다.</u></p> <p>제6조(혜택) 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사이버공주시민에게 사이버공주시민 확보 공로에 부응하는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u></p> <p>9.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마일리지 부여)</p> <p style="padding-left: 20px;"><u>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② 마일리지는 가입·유지·활동·구매 마일리지 등 4종으로 하며 알밤점수로 관리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③ 알밤점수는 환가할 경우 1점당 10원으로 계산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④ 가입마일리지는 사이버공주시민 가입 시 부여하며, 유지마일리지는 매년 1월 1일 부가하되 각각 100점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⑤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행위 시 부가한다.</p> <p>⑥ 구매마일리지는 사이버 가맹점 및 시범마을 이용(숙박, 식사, 체험 등), 특산물 구입(가맹점, 시범마을, 고맛 나루장터 등 활용), 여름캠프 선사교실 등 참가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알밤 점수로 환산하여 숙박, 참가, 구입 등의 종료 시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p> <p>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누적 점수, 사용가능 점수, 적립 예정 점수로 구분 관리한다.</p> <p>② 시장은 사이버공주시민이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에 알밤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알밤점수는 결제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아바타 관리, 아이템 구입 등에 소모되는 알밤점수는 10점 이내로 하여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p> <p>④ 개인별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사이버공주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⑤ 사이버공주시민을 탈퇴할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하며, 부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점수도 소멸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구성)

- ① ~ ③ (생략)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사이버공주시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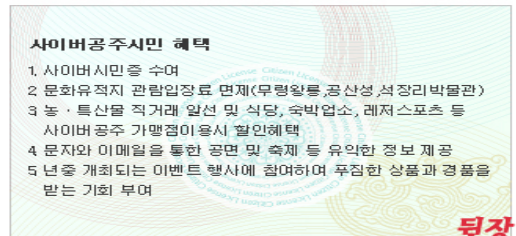


제8조(위원회 구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2년-----

[별표 1] 사이버공주시민증



성명	생년월일	관계
이 []	2006. 12. 23	딸
이 []	1974. 03. 08	배우자
이 []	2005. 01. 22	아들

현행	개정안
	 

공주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03. 18.)
에서 의결된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1년 04월 01일

공주시 조례 제 764 호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
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
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영 제42조”를 “영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제5조제1항 단서 중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6조에 따라”한다.

제11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를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u>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u>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식품위생법</u>」(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 ----- ----- ----- -----</p>
<p>제2조(정의)</p> <p>1. <u>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u>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p> <p>1. <삭제></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조성)</p> <p>1. <u>법 제65조의 규정</u>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p> <p>2. ~ 3.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p> <p>1. <u>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u>에 따라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p> <p>1. (생략)</p> <p>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u> 활동비 지원</p> <p>3. ~ 5.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u> --- ---</p> <p>3.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설〉</u> <u>〈신설〉</u></p> <p>6.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u>영 제42조</u>에서 정하는 사업</p> <p>7.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공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u>영 제39조의2</u>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1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u>영 제17조</u>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p>	<p>6. 법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p> <p>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p> <p>8. ----- -----<u>영 제61조</u>----- -----</p> <p>9. (중전의 제7호와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u>영 제56조</u>에 따라-----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용자대상) ----- <u>법 제89조제3항</u>에 따른----- ----- -----</p>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1년 04월 01일

공주시 예규 제 187 호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지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지휘·감독자,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의 직원,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등에 대해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시점은 자체 적발 사건의 경우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이며, 외부기관 적발 사건의 경우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한다. 다만, 외부 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3.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4. 징계 기준

구분	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공직자
징계 내용	중 징 계	파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경 징 계	감봉	견책	※ 기타
		견책	※ 기타	※ 기타

※ 기타 : 「공무원 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훈계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공주시 고시 제2011 - 27호

월미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우리시 월미동 4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월미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3월 14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월미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산업개발(주) 대표 신흥섭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0-10번지 덕성상가 2층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나. 위 치 :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 다. 면 적 : 138,070m²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8 ~ 2011년 12월 31일

나. 방 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중 분 류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당초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총 계				138,070	-	138,070	100.0	100.0	
합 계				108,530	-	108,530	78.6	78.6	
산업 시설 용지	A1-1	A1-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9,864	-	9,864	7.1	7.1	
	A2-1	A2-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174	-	7,174	5.2	5.2	
	A3-1	A3-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023	-	33,023	23.9	23.9	
	A3-2	A3-2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34	-	2,234	1.6	1.6	
	A4-1	A4-1	C10 식료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8,383	감) 12,763	5,620	13.3	4.1	
	-	A4-2	C10 식료품 제조업	-	증) 12,763	12,763	13.3	9.2	
	A4-2	A4-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140	-	28,140	20.4	20.4	
	A5-1	A5-1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6,764	감) 1,144	5,620	4.9	4.1	
	A5-2	A5-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48	증) 1,144	4,092	2.2	3.0	
기 타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녹지용지시설)				29,540	-	29,540	21.4	21.4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변경	
총 면 적		138,070	-	138,070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08,530	-	108,530	78.6	78.6	
지 원 시 설 용 지	소 계	2,394	-	2,394	1.7	1.7	
	근린생활시설	1,024	-	1,024	0.7	0.7	
	주 차 장	913	-	913	0.7	0.7	주차장 2개소
	관 리 실	457	-	457	0.3	0.3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7,066	-	17,066	12.4	12.4	
	도 로	16,588	-	16,588	12.0	12.0	중로1개소, 소로7개소
	오·폐수 처 리 장	478	-	478	0.4	0.4	
녹 지 시 설 용 지	소 계	10,080	-	10,080	7.3	7.3	
	완충녹지	10,080	-	10,080	7.3	7.3	완충녹지 6개소

나. 토지이용계획도 :계재생략

▣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1)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1,378.4	16,588	5	527.4	5,334	1	665.5	10,277	2	185.5	977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665.5	10,277	-	-	-	1	665.5	10,277	-	-	-
소로	7	712.9	6,311	5	527.4	5,334	-	-	-	2	185.5	977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5.5	381-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3.4	중로2-1	358-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0.0	중로2-1	385-1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2.3	중로2-1	337-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4	중로2-1	430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3	중로2-1	329-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1.6	소로1-2	산47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53.9	소로1-3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 계획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B1-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329-3번지 일원	475	-	475		
기정	B2-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367-2번지 일원	438	-	438		

나. 공간시설계획

1)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1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740	-	740		
기정	D1-2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77	-	1,077		저류시설 425m ² 포함
기정	D1-3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423	-	1,423		
기정	D1-4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4,523	-	4,523		
기정	D1-5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2,214	-	2,214		
기정	D1-6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3	-	103		

다. 방재시설계획

1) 우수지

■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2	우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58-2번지	425	-	425		

라.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C1-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월미동 358-2번지	478	-	478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량(m ³ /일)	비고
총 계		672.56	
산업시설용지 공업용수		566.12	
소 화 용 수		50.00	
생활용수	계	56.44	
	공장용지 종업원 생활용수	53.29	
	지원시설의 상근인구 생활용수	0.50	
	농공단지 이용인구 생활용수	2.65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발생량 (m ³ /일)	비고
총 계		363.71	
산업 시설 용 지 공 업 폐 수		317.89	
생활오수	계	45.82	
	공장용지입주업체 종업원	21.31	
	급식시설	15.99	
	지원시설용지에 의한 상근인구	2.12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 이용인구	6.40	

다. 전력공급계획

- 연간전력수요량 23,580MWh/년 (최대 부하 5,151.82kw)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규모면적 (㎡)	원 단위 (회선/㎡)	수요량 (회선)	비고
산업시설용지	108,530	0.02회선/㎡	542,65	
지원시설용지	2,394	0.02회선/㎡	11.97	
여유회선	-	20%	2.22	
계	110,924		556.65	

마. 에너지 공급계획

구 분	면적(㎡)	열원단위 (Mcal/㎡년)	열수요량 (Gcal/년)	발열량 (Kcal/l)	연료수요량 (kl/year)	비 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34	325	726	9.050	80.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0,197	75	3,015	9.050	333.12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9,864	106	1,046	9.050	115.5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9,712	609	5,915	9.050	653.5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140	331	9,314	9.050	1,029.21	
식품품 제조업	18,383	1,176	21,618	9.050	2,388.77	
소 계	108,530		41,634		4,600.41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38,070	-	138,070	100.0	
관 리 지 역	138,070	-	138,070	100.0	
보 전 관 리 지 역	-	-	-	-	
생 산 관 리 지 역	-	-	-	-	
계 획 관 리 지 역	138,070	-	138,070	-	

□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1)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주(005)	월미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월미동	138,070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주(005)	월미농공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의 102필지	138,070	-	138,07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5.5	381-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3.4	중로2-1	358-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0.0	중로2-1	385-1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2.3	중로2-1	337-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4	중로2-1	430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3	중로2-1	329-3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1.6	소로1-2	산47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53.9	소로1-3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B1-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충남 공주시 월미동 329-3번지 일원	475	-	475		
기정	B2-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충남 공주시 월미동 367-2번지 일원	438	-	438		

3) 공간시설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1	녹지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740	-	740		
기정	D1-2	녹지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77	-	1,077		저류시설 425㎡포함
기정	D1-3	녹지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423	-	1,423		
기정	D1-4	녹지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4,523	-	4,523		
기정	D1-5	녹지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2,214	-	2,214		
기정	D1-6	녹지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3	-	103		

4) 방재시설

■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2	우수지	저류시설	충남 공주시 월미동 358-2번지	425	-	425		완충녹지내 포함

5)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C1-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충남 공주시 월미동 358-2번지	478	-	478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08,530		108,530	-	108,530	
A1	1	1	9,864	월미동 384번지 일원	9,864	-	9,864	
A2	1	1	7,174	월미동 364-1번지 일원	7,174	-	7,174	
A3	1	1	35,257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33,023	-	33,023	
	2	2		월미동 산48-1번지 일원	2,234	-	2,234	
A4	1	1	46,523	월미동 산45-5번지 일원	18,383	감) 12,763	5,620	
	-	2		월미동 산45-5번지 일원	-	증) 12,763	12,763	
	2	3		월미동 산57-1번지 일원	28,140	-	28,140	
A5	1	1	9,712	월미동 336-7번지 일원	6,764	감) 1,144	5,620	
	2	2		월미동 329-3번지 일원	2,948	증) 1,144	4,092	

■ 지원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394		2,394	-	2,394	
B1	1		475	월미동 329-1번지 일원	475	-	475	
B2	1		438	월미동 367-2번지 일원	438	-	438	
	2		457	월미동 366-2번지 일원	457	-	457	
	3		1,024	월미동 368번지 일원	1,024	-	1,024	

■ 공공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478		478	-	478	
C1	1		478	월미동 358-2번지 일원	478	-	478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산업시설용지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A1-1 ~ A5-2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용 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중분류(코드번호)</th> <th>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C10</td> <td>식료품 제조업</td> </tr> <tr> <td>C25</td> <td>금속가공제품제조업</td> </tr> <tr> <td>C26</td> <td>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td> </tr> <tr> <td>C30</td> <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td> </tr> <tr> <td>C31</td> <td>기타 운송장비 제조업</td> </tr> <tr> <td>C39</td> <td>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td> </tr> </tbody> </table>	중분류(코드번호)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중분류(코드번호)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1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8조)														
B2-2 ~ B2-3	지원시설용지	높 이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공주시 월미동 368-5번지 일원	◦ 진입도로 (15m) 지정	◦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10.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11. 관계서류는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별첨 >

- 토 지 조 서 -

<지목별 현황>

구분	계	과수원	구거	답	대지	도로	임야	전	체
필지수	103	2	16	20	3	14	22	25	1
면적(m ²)	138,070	1,724	2,820	28,201	1,678	1,641	67,100	33,613	1,293
구성비(%)	100.0	1.3	2.0	20.4	1.2	1.2	48.6	24.3	1.0

<지목별 편입조서>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신청면적(m ²)	소유자	주소	비고
1	월미	334-1	과	962	9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위빌딩 19층	
2	월미	336-5	과	762	7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위빌딩 19층	
3	월미	334-2	구	10	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위빌딩 19층	
4	월미	336-2	구	271	27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월미	336-3	구	63	6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월미	337-4	구	23	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월미	358-1	구	241	24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월미	361-4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	월미	362-1	구	96	9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월미	420-1	구	176	176	국(농수산부)		
11	월미	420-2	구	76	76	국(농수산부)		
12	월미	420-3	구	383	383	국(농수산부)		
13	월미	420-4	구	327	327	국(농수산부)		
14	월미	420-5	구	513	513	국(농수산부)		
15	월미	420-6	구	272	272	국(농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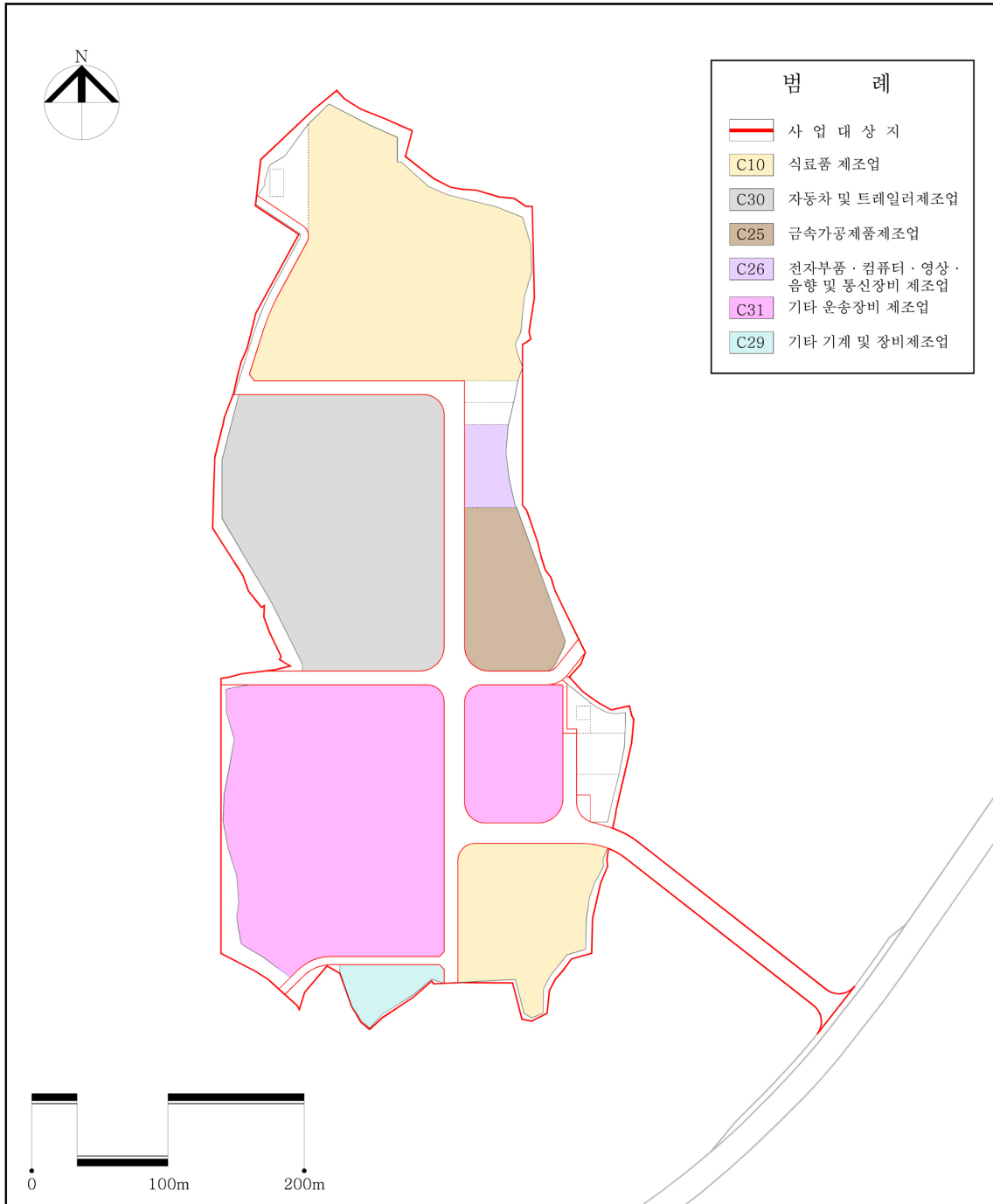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16	월미	420-7	구	12	12	국(농수산부)		
17	월미	420-8	구	137	137	국(농수산부)		
18	월미	421-1	구거	200	200	국(건설부)		
19	월미	328-2	답	327	32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0	월미	330-6	답	734	734	공주시		
21	월미	331	답	2,112	2,11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2	월미	332	답	2,040	2,04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3	월미	333	답	2,162	2,1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4	월미	336	답	197	19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5	월미	358-2	답	2,192	2,19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6	월미	359-1	답	2,813	2,81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7	월미	360	답	3,023	3,02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8	월미	360-1	답	173	17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9	월미	360-2	답	1,984	1,98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0	월미	363	답	3,302	3,30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1	월미	364-1	답	1,289	1,28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2	월미	366-1	답	1,564	1,56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3	월미	366-2	답	1,950	1,95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4	월미	366-3	답	1,891	1,89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5	월미	380-2	답	2	2	국(건설교통부)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36	월미	381-3	답	59	59	국(건설교통부)		
37	월미	382-4	답	294	29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8	월미	382-6	답	93	93	국(건설교통부)		
39	월미	334	대	619	6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0	월미	336-1	대	328	32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1	월미	365-1	대	731	73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2	월미	336-4	도로	3	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3	월미	336-6	도로	31	3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4	월미	337-5	도로	40	4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5	월미	337-7	도로	195	58	공주시		
46	월미	358-3	도로	53	5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7	월미	359-2	도로	69	69	공주시		
48	월미	363-2	도로	99	9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9	월미	364-2	도로	99	99	공주시		
50	월미	419-1	도로	185	185	국(건설부)		
51	월미	423	도로	69	69	국(건설부)		
52	월미	423-1	도로	13	13	국(건설부)		
53	월미	423-2	도로	206	206	국(건설부)		
54	월미	424-1	도로	47	47	국(건설부)		
55	월미	430	도로	699	669	국(국토해양부)		
56	월미	329-2	임야	331	33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7	월미	329-3	임야	3,666	3,66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8	월미	361-1	임야	145	14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9	월미	산47	임야	13,344	13,04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0	월미	산47-1	임야	1,914	1,91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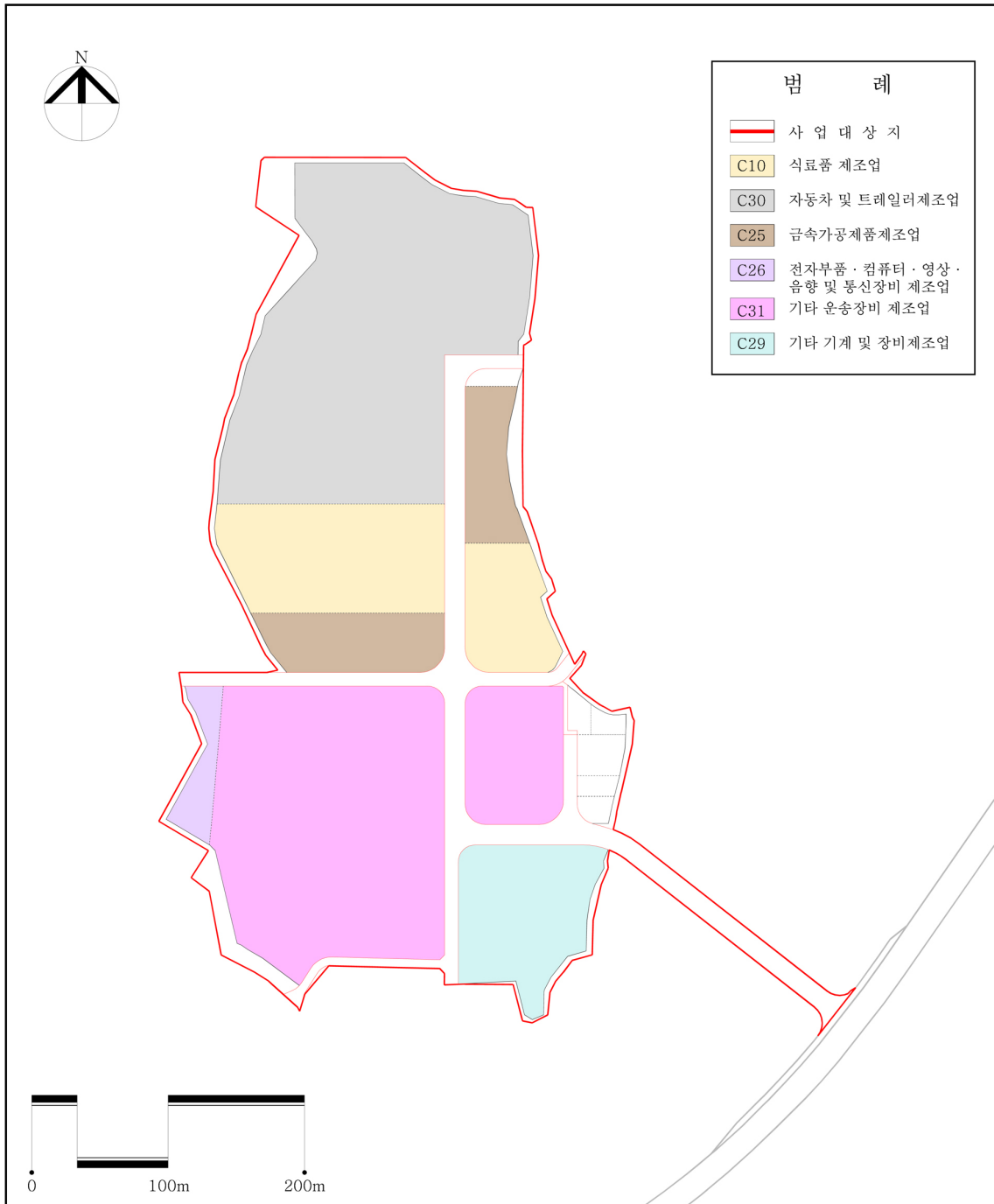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61	월미	산47-2	임야	529	52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2	월미	산48-1	임야	3,817	3,817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40-10 덕성상가 201	
63	월미	산48-3	임야	13,337	13,33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4	월미	산52-1	임야	6,347	6,34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5	월미	산53-4	임야	2,652	2,65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6	월미	산53-5	임야	3,967	3,96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7	월미	산53-10	임야	1,117	1,11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8	월미	산53-11	임야	614	61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9	월미	산53-12	임야	458	45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0	월미	산53-13	임야	1,562	1,5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1	월미	산53-14	임야	2,325	2,32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2	월미	산53-15	임야	1,697	1,69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3	월미	산53-16	임야	200	2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4	월미	산56-3	임야	1,011	1,01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5	월미	산56-4	임야	627	62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6	월미	산57-1	임야	7,736	6,95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7	월미	산58-1	임야	2,380	784	조희형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327	
78	월미	210-1	전	2,063	2,06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9	월미	211-1	전	645	64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0	월미	311	전	1,170	1,17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81	월미	329	전	1,739	1,73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2	월미	330	전	2,850	2,85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3	월미	330-1	전	783	78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4	월미	330-2	전	526	52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5	월미	330-3	전	96	9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6	월미	330-4	전	1,418	1,41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7	월미	330-5	전	235	23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8	월미	334-3	전	802	80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9	월미	335	전	1,613	1,61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0	월미	336-7	전	3,399	3,39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1	월미	337-8	전	1,042	1,04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2	월미	362-3	전	754	75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3	월미	363-1	전	1,349	1,34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4	월미	365	전	1,597	1,59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5	월미	366-4	전	641	64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6	월미	367-2	전	834	83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7	월미	368-5	전	1,449	1,44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8	월미	368-7	전	1,277	1,27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9	월미	384	전	3,233	3,23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100	월미	385-1	전	3,002	2,87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101	월미	387	전	1,950	420	임헌문	우성면 신옹리 100	
102	월미	388	전	800	8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103	월미	330-7	체	14,572	1,293	공주시		
합 계				155,846	138,070			

업종배치계획도 (당초)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검상 농공단지 세목(정정)고시

공주시 고시 제2011-31호(2011.02.15.)로 고시된 검상 농공단지 세목에 지번오류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검상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주	소	성	명	비	고
		테크노세미캠(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번지	대표	정지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구	분	업	종	비	고
		테크노세미캠(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테크노세미켐(주)	충남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86,092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 2011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정정)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공주시 검상동	300-5	구	238	238	정해룡	공주시 우성면 오동리 125			
2	공주시 봉정동	642	구	1,092	1,092	국(농수산부)				
3	공주시 봉정동	646	구	473	473	국(농수산부)				
4	공주시 검상동	290-1	답	468	468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5	공주시 검상동	290-4	답	1,024	404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6	공주시 검상동	291-1	답	529	529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7	공주시 검상동	291-2	답	1,408	1,408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8	공주시 검상동	291-3	답	774	774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9	공주시 검상동	291-8	답	408	408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10	공주시 검상동	291-9	답	214	214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11	공주시 검상동	291-10	답	130	130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12	공주시 검상동	291-16	답	1,071	1,071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13	공주시 검상동	291-17	답	13	13	공주시				
14	공주시 검상동	291-20	답	64	34	이소룡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공나루 APT104-1103			
15	공주시 검상동	294-1	답	1,221	1,221	테크노세미켐(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16	공주시 검상동	294-2	답	422	165	공주시				
17	공주시 검상동	294-7	답	164	164	공주시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	공주시 검상동	295-1	답	274	36	공주시				
19	공주시 검상동	297-1	답	278	278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20	공주시 검상동	297-10	답	1,006	449	공주시				
21	공주시 검상동	298-1	답	93	93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22	공주시 검상동	298-2	답	1,701	1,701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23	공주시 검상동	298-3	답	1,660	1,660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24	공주시 검상동	298-5	답	617	370	공주시				
25	공주시 검상동	299-1	답	810	810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26	공주시 검상동	299-2	답	2,228	2,228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27	공주시 검상동	300-1	답	340	340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28	공주시 검상동	300-2	답	377	377	김현숙	공주시 금흥동 259 새뜸현대아파트 403-1901	의당농 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근저당
29	공주시 검상동	300-3	답	2,165	2,165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30	공주시 검상동	300-4	답	380	380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31	공주시 검상동	300-10	답	271	271	김현숙	공주시 금흥동 259 새뜸현대아파트 403-1901			
32	공주시 봉정동	566-2	답	187	187	김인태	공주시 이인면 검상리 99			
33	공주시 봉정동	585-3	답	2,288	56	국(건설교통부)				
34	공주시 봉정동	587	답	1,927	1,927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35	공주시 봉정동	588-2	답	758	758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36	공주시 봉정동	588-3	답	3,306	3,306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37	공주시 봉정동	589	답	2,407	2,407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38	공주시 봉정동	590	답	3,665	3,665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39	공주시 봉정동	591-1	답	1,053	1,053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0	공주시 봉정동	591-2	답	1,127	1,127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1	공주시 봉정동	615-7	답	486	486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2	공주시 봉정동	615-9	답	403	403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3	공주시 봉정동	615-10	답	450	450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4	공주시 봉정동	615-11	답	509	509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5	공주시 봉정동	615-12	답	311	311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6	공주시 검상동	702-6	답	1,712	1,712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7	공주시 검상동	702-7	답	572	572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8	공주시 검상동	702-8	답	881	881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49	공주시 검상동	702-9	답	393	393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50	공주시 검상동	702-10	답	423	423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51	공주시 검상동	702-11	답	680	680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52	공주시 봉정동	641	도	1,628	1,628	국(건설부)				
53	공주시 검상동	710-1	도	120	120	국(건설부)				
54	공주시 검상동	711	도	357	209	국(건설부)				
55	공주시 검상동	산1-35	임	26,954	26,954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56	공주시 봉정동	산106	임	14,384	14,384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57	공주시 봉정동	591-3	임	232	232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58	공주시 검상동	710	장	14	14	공주시				
59	공주시 검상동	291-14	주	635	635	공주시 에너지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291-14			
60	공주시 검상동	291-19	주	337	17	공주시				
61	공주시 검상동	291-4	차	276	276	공주시 에너지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291-14			
62	공주시 검상동	291-18	차	274	42	공주시				
63	공주시 검상동	262-3	천	150	61	공주시				
64	공주시 검상동	262-18	천	396	22	국(건설부)				
65	공주시 봉정동	615-8	천	228	228	테크노세미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계				91,436	86,092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관련 부서에서 이·통장 자녀 장학생의 원활한 추천과 선발을 위하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장학생 선발기준 개선 건의와
- 아울러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선발이 필요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자녀 장학생 자격기준 변경(제2조 4항)

- 1) 종전에는 “이·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 를 앞으로는 “이·통장의 자녀로” 로 변경(안 제2조 4항)

- 2) 종전에는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이상** 과목이 50%이상인 학생” 을 앞으로는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미이상** 과목이 50%이상인 학생” 으로 변경(안 제2조 4항)
 - 3) 종전에는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이상인 학생” 을 앞으로는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이상인 학생” 으로 변경
 - 4)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신설(안 제2조 4항)
- 나. 종전에는 “제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 을 앞으로는 “제 1호의 규정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 으로 변경(안 제2조)
- 다. 장학생 선발 확정은 “매 학년 개시 후 1분기 이내에” 를 “매 학년 개시 후 2분기 이내에” 로 변경(안 제2조)
- 라.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를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로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사항

4. 참고사항

1.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 - 702
 - 전화 : 041) 840-2809, FAX 041)840-2811
2. 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중 “1분기”를 “2분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는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 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미” 이상 과목이 5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 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 라.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6.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제2조제5항제4호 본문중 “1분기” 를 “2분기” 로 한다.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 운동 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2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p> <p>④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p> <p>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우” 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p> <p>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p> <p>라. <u>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중 학력검정 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u></p> <p>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p> <p>3. (생략)</p> <p>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p> <p>5.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p> <p>④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u>미</u>” 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p> <p>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p> <p>라. <u>품행이 단정하고 효행,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한다.</u></p> <p>2. 제1호의 규정에 <u>해당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u>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p> <p>5. 삭제</p>			

현행	개정안
<p>6.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p> <p>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p>6.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p> <p>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시지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2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4 월 1 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 설치에 따른 정원에 관한
사항과 분장사무 명시,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 및 일부 불분명한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함(규칙안 제3조)

나. 발전기획단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을 설치하고
팀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함(규칙안 제20조)

- 다. 미래도시팀의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련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으로 이관함(규칙안 제21조, 제23조의3)
- 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과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정원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삭제하고, 훈령에 반영하고자 함(규칙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실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2233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사무조정)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실·과·팀(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 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상 비중과 업무의 양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목적에 최우선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업무 담당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④ 국·단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팀의 사무는 국·단장이,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직속기관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20조 중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을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시책추진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지원 및 대응
5.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및 출범준비단 지원
6. 관련 자치법규개정안 준비 및 각종 공부 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사무, 지방세 및 재산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8.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제외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 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4] 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별표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 부터 [별표 10] 까지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u>제3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실·과·팀(이하“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때는 관련되는 국·단 또는 과중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u></p> <p><u>제20조(발전기획단) 단장은 -----</u> <u>---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u> <u>으로 보한다</u></p>	<p><u>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u>제3조(사무조정)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실·과·팀(이하 “과” 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 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상 비중과 업무의 양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목적을 최우선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u></p> <p><u>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업무 담당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u></p> <p><u>④ 국·단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팀의 사무는 국·단장이,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직속기관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u></p> <p><u>제20조(발전기획단) 단장은 -----</u> <u>--- 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u> <u>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u> <u>으로 보한다</u></p>	<p>제명 변경</p> <p>사무처리 부서를 지정하는 방법 명확화</p> <p>기구 추가</p>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21조(미래도시팀) (생략)</p> <p>1. ~ 8. (생략)</p> <p>9.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한 발전 전략 개발·조정</p> <p>10. 행복도시 건설 지원 및 이주민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p> <p>1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p> <p>12. ~ 30. (생략)</p> <p><신설></p>	<p>제21조(미래도시팀)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12. ~ 30.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의3(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시책추진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p> <p>2.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p> <p>3.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지원 및 대응</p> <p>5.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및 출범준비단 지원</p> <p>6. 관련 자치법규개정안 준비 및 각종 공부 정비 등에 관한 사항</p> <p>7. 사무, 지방세 및 재산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p> <p>8.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제외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p> <p>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기구 및 사무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u></p> <p><u>②정원관리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4부터 별표8과 같다.</u></p> <p><u>③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한시정원은 별표9와 같다</u></p> <p><u>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원중 별표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u>제4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3] 과 같다.</u></p> <p><u>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4]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u></p>	

[별표 3] (개정 2009. 10. 30.)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86	515	17	134	70	23	166	61
정 무 직 계	1	1	0	0	0	0	0	0
시 장	1	1						
일 반 직 계	756	414	11	69	41	19	146	56
4 급 소 계(개정'10.9.15.)	6	4	1	1	0	0	0	0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3	2	1					
지방기술서기관	1			1				
5 급 소 계	48	24	2	3	3	1	10	5
지방행정사무관	4	4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개정'10.9.15.)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5	10	2		2			1
지방행정·녹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6	3				1	8	4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1	1						
6 급 소 계	204	128	3	11	12	5	40	5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주사	74	55	3		5	1	8	2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시설주사	11	1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환경주사	1	1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사서주사	0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2	2						
지방행정·보건주사	3	1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3	3						
지방간호·보건주사	3			3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19	5				1	11	2
지방약무·보건주사	0							
지방행정·공업주사	4	4						
지방행정·녹지주사	4	3			1			
지방행정·시설주사	21	17			3	1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개정'10.9.15.)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0						10	
지방행정·보건·공업주사	1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8	9			1		7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1					1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	0							
지방행정·시설·공업주사	2	2						
지방행정·시설·환경주사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	3			3				
7급 소계	233	136	4	14	13	5	41	20
지방행정주사보	64	44	4	1	5	1		9
지방시설주사보	26	25			1			
지방환경주사보	4	4						
지방방송통신주사보 <small>(개정'10.9.15.)</small>	2	2						
지방전산주사보	1	1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세무주사보	6	6						
지방사서주사보	3				3			
지방보건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	4	4						
지방녹지주사보	5	5						
지방공업주사보	6	4			2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5	5				1	6	3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2				
지방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1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small>(개정'10.9.15.)</small>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2	9			1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2				1	8	2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8	3				1	23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3	2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2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small>(개정'10.9.15.)</small>	1	1						
지방시설·전산주사보	1	1						
지방농업·수의주사보	2	2						
지방간호·보건주사보	5			5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2	5					2	5
지방행정·농업·전산주사보	2	2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8 급 소 계	188	99	1	33	8	3	29	15
지방행정서기	42	25	1				6	10
지방세무서기	11	10					1	
지방농업서기	2	2						
지방녹지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3	1		1	1			
지방시설서기	23	13			1		9	
지방전산서기	0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환경서기	3	3						
지방사서서기	3				3			
지방보건서기	6			6				
지방사회복지서기	5	1					4	
지방의료기술서기	9			9				
지방행정·환경서기	1	1						
지방행정·통신서기	0							
지방행정·전산서기	5	5						
지방행정·시설서기	13	12			1			
지방행정·세무서기	7					1	5	1
지방행정·보건서기	2						2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2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3	3						
지방행정·공업서기	4	3			1			
지방전산·통신서기	0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시설·전산서기	2	2						
지방보건·환경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3	3						
지방간호·보건서기	10			10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3	10			1			2
지방간호·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지방행정·시설·농업서기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9 급 소 계	77	23	0	7	5	5	26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행정서기보	29	5			2	3	14	5
지방농업서기보	2	1					1	
지방녹지서기보	2	2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환경서기보	1	1						
지방시설서기보	3	1				1	1	
지방세무서기보	0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전산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4			4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					1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0							
지방행정·시설서기보	4	4						
지방행정·세무서기보	5						4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4						4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small>(개정'10.9.15.)</small>	1	1						
지방농업·녹지서기보	1	1						
지방의료기술서기보	0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0	4					2	4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2			2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별정 직계	21	0	0	21	0	0	0	0
6급상당 소계	18	0	0	18	0	0	0	0
보건진료원	18			18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동
7급상당 소 계	3	0	0	3	0	0	0	0
공기업요원	0							
보건위생감시원	3			3				
농기계교육교관	0							
7·8급상당 소 계	0							
여성복지상담원	0							
8급상당 소 계	0	0	0	0	0	0	0	0
보건위생감시원	0							
농기계교육교관	0							
지 도 직 계	30	0	0	30	0	0	0	0
지방농촌지도관	3			3				
지방농촌·생활지도관	0			0				
지방농촌지도사	27			27				
지방생활지도사	0			0				
지방농촌·생활지도사	0			0				
연 구 직 계	4	1	0	0	3	0	0	0
지방학예연구사	3				3			
지방기록연구사	1	1						
기 능 직 계	174	99	6	14	26	4	20	5
지방기능6급 소 계	5	3	0	1	1	0	0	0
지방전기장	0							
지방운전장	1	1						
지방사무실무장·위생장·조무장	2	1			1			
지방전기장·통신장·전화상담장	1	1						
지방전기장·기계장·열관리장	1			1				
지방기능7급 소 계	15	13	0	1	1	0	0	0
지방전기장	1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위생장	1	1						
지방운전장	3	3						
지방사무실무장	3	2			1			
지방기계장	3	3						
지방열관리장	1	1						
지방기계장·전기장	1	1						
지방기계장·열관리장	1			1				
지방기계장·운전장	1	1						
지방기능8급 소계	31	23	1	1	6	0	0	0
지방전화상담원	1	1						
지방전기원	2	2						
지방기계원	4	4						
지방운전원	8	8						
지방사무실무원	8	7	1					
지방가스원	1	1						
지방위생원	4				4			
지방통신원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지방기계·열관리원	1				1			
지방기능9급 소계	60	33	3	4	6	3	8	3
지방건축원	1	1						
지방전화상담원	1	1						
지방위생·조무원	1						1	
지방운전원	20	11	1	1	1	1	5	
지방사무실무원	21	16	2	1	2			
지방조무원	1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급 및 직렬별 정원표 (제42조제1항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지방기계원	5	2		1	2			
지방통신원	1				1			
지방위생원	6					1	2	3
지방전기·기계원	1	1						
지방기계·운전원	1			1				
지방기계·열관리원	1					1		
지방기능10급 소계	63	27	2	7	12	1	12	2
지방전기원	3	1			2			
지방운전원	16	4	1	3	2	1	5	
지방사무실무원	27	21	1		5			
지방조무원	2	1			1			
지방열관리원	1			1				
지방위생원	13			2	2		7	2
지방기계·운전원	1			1				

[별표 4]

공주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4항관련)

직급별 기관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직무분야
총 계	12	7		3	2				
5급 소계	1			1					
지방의무사무관	1			1					의료분야
6급 소계	4	2			2				
지방행정주사	3	1			2				공무원 교육(1) 공연기획(1) 석장리박물관운영(1)
지방행정· 시설주사	1	1							공공디자인(1)
7급 소계	5	4		1					
지방행정주사보	4	4							시정홍보(1) 유통지원(1) 축제(1) 공기업 회계관리(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보건진료소(1)
8급 소계	2	1		1					
지방행정서기	1	1							외국어 통역
지방공업서기	1			1					농기계 교육교관

공주시 공고 제2011-314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인

1. 개정이유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의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변경시행과 문화재 관람에 따른 사항 및 관람료 징수 절차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로 변경시행 (조례안 제1조)
- 나. 설 및 추석명절 당일을 휴관일로 지정(신설) (조례안 제2조)
- 다. 관람료 징수의 군인에 공익근무요원 추가 (조례안 제5조)
- 라. 무료관람 대상자에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수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 청소년과 어린이 추가 (조례안 제6조)
- 마. 수입금 불입을 공주시금고에서 수납기관으로 변경 (조례안 제13조, 규칙안 제6조)

바.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대체(신설)
(조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 : 문화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관리소

주소 : 공주시 용진동 57번지 우편번호 : 301-060

전화 : 041-840-2547 FAX : 041-858-004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개시간) 문화재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조시간 및 관광객의 편의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하절기 : 3월 1일~10월 31일, 09:00~18:00
2. 동절기 : 11월 1일~2월 말일, 09:00~17:00

다만, 설 및 추석명절 당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람료 징수구분) 관람료의 징수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
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
4. 어른 :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중 청소년과 어린이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① 관람료는 일반회계·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 수입금으로 한다.

- ② 관람료징수자는 관계장부에 종류별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관계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 수납기관(공주시 금고 또는 그 수납대행점)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계장부의 비치) 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매표종사원은 관람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고 관람권매표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2호로 지정된 공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일반에 공개하고, <u>문화재보호법 제39조</u>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 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문화재보호법 제49조</u> ----- ----- ----- -----</p>
<p>제2조(공개시간) 문화재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조시간 및 관광객의 편의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1. 하절기 : 3월 1일 ~ 10월 31일, 09:00~18:00</p> <p>2. 동절기 : 11월 1일 ~ 2월 말일, 09:00~17:00</p> <p><단서 신설></p>	<p>제2조(공개시간) ----- ----- ----- ----- ----- -----</p> <p><u>다만, 설 및 추석명절 당일을 휴관일로 한다.</u></p>
<p>제5조(관람료 징수구분)</p> <p>1.~2. (생략)</p> <p>3. <u>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u></p> <p>4.~5. (생략)</p>	<p>제5조(관람료 징수구분)</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전투경찰·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u>)</p> <p>4.~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무료관람)</p> <p>1. <u>국민 및 그 수행자</u></p> <p>2. <u>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u></p> <p>3.~14. (생략)</p>	<p>제6조(무료관람)</p> <p>1. <u>국민,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u></p> <p>2. <u>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중 청소년과 어린이</u></p> <p>3.~14.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입금의 처리)</p> <p>① (생략)</p> <p>② <u>매표종사원은 관계장부에 종류별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관계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날 공주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u></p>	<p>제13조(수입금의 처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관람료징수자는 ----- ----- -----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 수납기관(공주시금고 또는 그 수납대행점)에 불입하여야 한다.</u></p>
<p>제14조(관계장부의 비치)</p> <p>①~② (생략)</p> <p><단서 신설></p>	<p>제14조(관계장부의 비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u></p>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입금 처리) 조례 제14조제2항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수납기관(공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점)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문화재관리소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수납기관(공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점)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5조 (생략)</p> <p>제6조(수입금 처리)조례 제14조제2항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u>공주시금고</u>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u>공휴일 또는 일요일인</u> 경우에는 관람료를 <u>공주시문화재관리소에 있는 이중철제금고</u>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u>공주시금고</u>에 입금하여야 한다.</p>	<p>제1조~5조 (현행과 같음)</p> <p>제6조(수입금 처리) ----- ----- ----- ----- <u>수납기관</u> <u>(공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점)</u>에----- ----- <u>공휴일 또는 주말인</u> ----- ----- ----- ----- <u>수납기관(공주시</u> <u>금고와 그 수납대행점)</u>에 ----- -----</p>

공주시 공고 제 2011 - 315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과 읍면동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여 원활한 기업유치 업무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기업유치활동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조정하고 읍면동 기업유치 활동위원회 구성은 삭제하여 구성안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유치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업유치과(기업유치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 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면동에는 각각 2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 본청 및 읍면동별 활동위원회 위원 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 본청은 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5호 중 “읍면동장,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을 “기업유치 관련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시 본청의 경우 기업유치담당주사로, 읍면동은 업무담당주사로”를 “기업유치담당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p> <p>① 활동위원회는 <u>시 본청에는 100명</u> 이내, 읍·면·동에는 각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u>시 본청 및 읍·면·동별 활동위원회 위원</u>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시 본청은 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1. ~ 4. (생략)</p> <p>5. <u>읍·면·동장,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u></p> <p>6. (생략)</p> <p>④ ~ ⑤ (생략)</p> <p>⑥ 활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시 본청의 경우 기업유치담당주사로, 읍·면·동은 업무담당주사로</u> 한다.</p> <p>⑦ (생략)</p>	<p>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p> <p>① ----- <u>50명</u>-----</p> <p>-----</p> <p>-----</p> <p>② ----- <u>위원 중</u></p> <p>-----</p> <p>-----</p> <p>-----</p> <p>③ -----</p> <p><u>시장</u>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기업유치 관련 공무원</u></p> <p>6.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p> <p>----- <u>기업유치담당으로</u></p> <p>-----</p> <p>⑦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활동위원회는 시 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면동에는 각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본청 및 읍면동별 활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본청은 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출향인사·기업인, 정·관계 인사, 시의회 의원
 2. 기업체 대표 및 임원
 3.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봉사단체 임원
 4. 부동산 컨설팅,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5. 읍면동장,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2.16.)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활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기업유치 홍보 및 기업정보 수집
 2. 시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등
- ⑥ 활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의 경우 기업유치담당주사로, 읍면동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⑦ 활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공고 제2011 - 317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통합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 제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안의 정의를 각종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함
-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시민과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시설·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 제안접수시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시청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
 - 제출된 제안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이 가능하고,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등 기준으로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함
 - 제출된 제안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채택제안은 실시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적용 실시
 -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가능
-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 채택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등급 결정하고,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인사상 특전 및 창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무제안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채택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제안에 해당될 경우 그 권리를 승계
-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관리(불채택 제안은 2년)하고 실시 성과를 평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예산실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2411 FAX : 041) 840 - 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및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각종 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15조(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표창 및 부상금 등)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창안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 제19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0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15조, 제16조 관련)

시상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5점 이상
은 상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88점 이상
동 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80점 이상
장 려 상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70점 이상
노 력 상	3만원 이하 공주사랑상품권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 관련)

구 분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업무 관련 창안 채택	금 상	특별승급 1호봉	0.8	
	은 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5	
	동 상		0.3	

[비고] 창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공인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1. 폐기공인명 : 공주시구계보건진료소유구읍장인민원실전용 외 17개 공주시보건진료소 면장인민원실전용 공인
2. 공인 폐기 사유 : 팩스민원 이용 저조에 따른 공인 미사용 및 관수자 불일치
3. 공인 폐기 일자 : 2011. 4. 1.
4. 폐기 공인 인영

공 인 명	인 영	규 격	비 고
공주시구계보건진료소 유구읍장인민원실전용		2.0cm × 2.0cm (정방형)	
공주시추계보건지료소 유구읍장인민원실전용		"	

공 인 명	인 영	규 격	비 고
공주시신흥보건진료소 이인면장인민원실전용		2.0cm × 2.0cm (정방형)	
공주시덕지보건진료소 탄천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대학보건질료소 탄천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양화보건진료소 계룡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화현보건진료소 계룡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왕흥보건진료소 계룡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마암보건진료소 반포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상신보건진료소 계룡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송학보건진료소 의당면장인민원실전용		"	

공 인 명	인 영	규 격	비 고
공주시장암보건진료소 장기면장인민원실전용		2.0cm × 2.0cm (정방형)	
공주시장원보건진료소 정안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문천보건진료소 정안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용봉보건진료소 우성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운암보건진료소 사곡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대룡보건진료소 신평면장인민원실전용		"	
공주시평소보건진료소 신평면장인민원실전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8호선, 소로3-30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 공고

봉황초등학교 일원 주거밀집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생활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긴급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8호선, 소로3-3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봉황동 214-1번지 일원, 봉황동 282-1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8호선, 소로3-30호선)
 - 명 칭 : 봉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소로3-28(L=110m, B=6m), 소로3-30(L=70m, B=6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주시장(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2011. 4. 1 ~ 2011. 4. 21(시보게재, 20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458)
8.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및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주 소	비 고
	읍,면,동	리			지 적	편 입			
1	봉황동		214-3	도	79	61	국	공주시	1지구
2	봉황동		214-1	대	245	78	배구환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0 거여1단지아파트103-214	1지구
3	봉황동		215	대	274	89	김갑조	공주시 봉황동 215	1지구
4	봉황동		216	대	331	125	조권형	공주시 반죽동 173-1	1지구
5	봉황동		195	대	112	66	장정민	공주시 봉황동 195	1지구
6	봉황동		193	대	238	77	조동원	공주시 봉황동 193	1지구
7	봉황동		198-1	대	387	116	김효순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240	1지구
8	봉황동		378-1	도	18,069	81	국	건설부	1지구
9	봉황동		213-1	도	84	25	국	공주시	1지구
10	봉황동		213	대	366	4	신동순	공주시 봉황동 213	1지구
11	봉황동		197	대	248	6	이정희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50	1지구
12	봉황동		199-2	대	314	39	김종철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68	1지구
13	봉황동		199-1	대	172	11	명영자	공주시 봉황동 199-1	1지구
14	봉황동		282-107	도	38	38	국	공주시	2지구
15	봉황동		282-17	도	446	18	홍순룡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0-5	2지구
16	봉황동		282-117	대	33	33	최향숙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919 백석백산블루밍1차아파트 105-1402	2지구
17	봉황동		282-118	대	15	15	이종태	공주시 봉황동 282-77	2지구
18	봉황동		283-14	대	45	45	이현순 외1인	공주시 봉황동 274-2	2지구
19	봉황동		283-16	대	79	79	임선옥	공주시 봉황동 283-8	2지구
20	봉황동		284-7	대	17	17	이두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0-1 동문아파트2동301호	2지구
21	봉황동		385	도	208	8	국	건설부	2지구
22	봉황동		274-7	대	24	2	국	공주시	2지구
23	봉황동		282-106	도	54	4	국	공주시	2지구
24	봉황동		282-110	도	57	24	국	공주시	2지구
25	봉황동		282-116	도	33	8	국	공주시	2지구
26	봉황동		283-12	대	111	111	국	공주시	2지구
27	봉황동		284-6	대	31	31	민승기	공주시 봉황동 285-2	2지구
28	봉황동		284-5	대	3	1	국	공주시	2지구

■ 수용 및 사용할 물건 세목조서

일련 번호	지장물건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지번				성 명	주 소	
1	공주	봉황	213	가 옥	슬레이트	51㎡	신동순	봉황동 213	1지구
				옥 실	슬라브	7㎡			
				담장	블럭	16m			
				장독대	블럭	8㎡			
				유실수	앵두나무외	1주			
				관상수	오가피나무	1주			
2	공주	봉황	214-1	가 옥	슬레이트	81㎡	배구환	서울 송파구 거여 동 290 거여1단 지 103동 214	1지구
				창고	슬레이트	4㎡			
				화장실	슬레이트	2㎡			
				담 장	블럭	18m			
				담 장	벽 돌	13m			
				바닥	콘크리트	78㎡			
				부동급수전		1EA			
3	공주	봉황	215	가 옥	슬레이트	65㎡	김갑조	봉황동 215	1지구
				창 고	슬레이트	5㎡			
				창 고	슬레이트	8㎡			
				담 장	블럭	15m			
				정화조		1EA			
4	공주	봉황	216	가 옥	슬레이트	92㎡	조권형	반죽동 173-1	1지구
				창 고	슬레이트	11㎡			
				담 장	블럭	28m			
				대 문	철 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바닥	콘크리트	110㎡			
				부동급수전		1EA			
				수도가	콘크리트	4㎡			
				유실수	복숭아나무	2주			
				관상수	은행나무	1주			
5	공주	봉황	195	가 옥	슬레이트	68㎡	장정민	봉황동 195	1지구
				가 옥	슬라브	13㎡			
				창 고	슬라브	9㎡			
				담 장	슬레이트	8m			
				담 장	블럭	10m			
				대 문	철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바닥	콘크리트	28㎡			
				대문지붕	콘크리트	3㎡			

6	공주	봉황	193	가 옥	기 와	29㎡	조동원	봉황동 193	1지구
				가 옥	슬레이트	20㎡			
				담 장	블 러 크	15m			
				대 문	철 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바 닷	블 러 크	51㎡			
				부동급수전		1EA			
				관상수	관상수	2주			
				화 단		2㎡			
7	공주	봉황	198-1	화장실	블 러 크	9㎡	김효순	우성면 옥성리 240	1지구
				창 고	슬레이트	3㎡			
				정화조		1EA			
8	공주	봉황	282-7	가 옥	슬레이트	150㎡	최향숙	천안시 서북구 백 석동 919 백석벽 산블루밍1차아파 트 105-1420	2지구
				가 옥	슬라브	73㎡			
				유실수	무화과	1주			
				바 닷	블 러 크	20㎡			
				옹 벽		12m			
9	공주	봉황	282-77	가 옥	기 와	73㎡	이종태	봉황동 282-77	2지구
				화장실	슬레이트	10㎡			
				화 단		1㎡			
				담 장	블 러 크	27m			
				대 문	철 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바 닷	콘크리트	41㎡			
10	공주	봉황	282-78	가 옥	기 와	75㎡	양송자	교동 212	2지구
				창 고	슬레이트	19㎡			
				담 장	블 러 크	29m			
				대 문	철 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바 닷	콘크리트	56㎡			
				옹 벽		14m			
11	공주	봉황	283-6	가 옥	슬레이트	186㎡	김인원	봉황동 283-6	2지구
				가 옥	슬라브	43㎡			
				화장실	슬레이트	6㎡			
				담 장	슬레이트	15m			
				담 장	블 러 크	20m			
				대 문	철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바 닷	콘크리트	58㎡			
				바 닷	블 러 크	54㎡			
				부동급수전		2EA			
				석축		23m			
				장독대	콘크리트	9㎡			
				정화조		1EA			
				유실수	감나무외	2주			
				관상수	단풍나무외	2주			

12	공주	봉황	283-7	가 옥	슬레이트	46㎡	이현순외 1	봉황동 274-2	2지구
				창 고	슬레이트	5㎡			
				휨스		3m			
				담 장	슬레이트	11m			
				담 장	블 러	9m			
				대 문	철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바닥	콘크리트	57㎡			
				관상수	백일홍외	1주			
13	공주	봉황	283-8	가 옥	기 와	79㎡	임선옥	봉황동 283-8	2지구
				담 장	슬레이트	33m			
				대 문	철 재	1EA			
				문 주	철 재	2EA			
				부동급수전		1EA			
				장독대	콘크리트	5㎡			
				바 닥	블 러	30㎡			
				유실수	석류나무	1주			
				14	공주	봉황			
화장실	슬레이트	3㎡							
담 장	블 러	13m							
대 문	철 재	1EA							
문 주	콘크리트	2EA							
부동급수전		1EA							
장독대	콘크리트	4㎡							
수도가	콘크리트	2㎡							
바 닥	콘크리트	28㎡							
고추밭		17㎡							
석 축		7m							